

---

# 민생불편 해소



---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조기 시행	9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11
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	13
주차·주거문제의 창의적 해법 제시!	15
건축인·허가 절차개선으로 투명성 Up, 처리일자 Down	19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간소화	21
커튼 설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23



##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조기 시행 〈중복투자심사 사전 방지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 개선배경

〈수원 권선지구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개교: '23.3월)〉

- 사업규모 : 곡반3초·중학교, 학교복합화(체육관, 대강당, 수영장 등 포함) 시설
- 사업비 : 721억원(국비 40, 시비 235, 기타 446 / 복합화 275, 학교 216, 부지 230)
- ※ 학교복합시설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학교시설
-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 발생
  - 중복투자심사 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지연으로 지역의 교육여건 향상 부진, 집단민원 지속 발생, 관계기관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투자심사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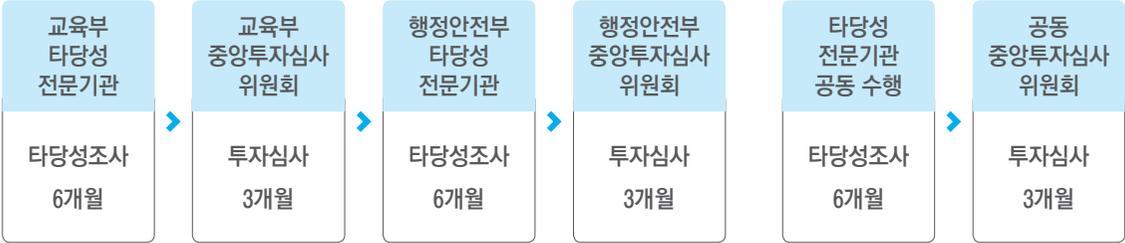
###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지방재정 투입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투자심사 일원화(지자체→행정안전부, 교육청→교육부)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지연 예상	- 행정안전부 &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신설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 ⇒ 최대 9개월 기간 단축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입 학교시설 건립 관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 일부 수용으로 화신
  - 법령 또는 지침(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및 시행(9월)
- 경기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조기 개정 건의 → 조기개정 공식화(6월)

(현행)

(개선)



• 개선효과

○ 중복투자심사 사전 방지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 심사기간 최대 9개월 단축**  
 “경기도 조기 개징 건의로 예산절감 효과·주민편의성 UP”

현행 (총 15개월)	개선 (총 9개월)
교육부 지방교육청 9개월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청 9개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3개월	지방교육청 투자심사 3개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3개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3개월

\* 학교복합시설: 학교부지 내 체육관, 문화시설, 도서관 등 복합시설 형태로 학생 및 인근 주민편의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기도 보도자료

**시사-백화** **보도자료** 작성과 제정경과

담당자: 최 영 000 / 사무관: 000  
 연락처: 064-205-3702 / 064-205-371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책 개선**  
 -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경기지사 확대 및 재심사 기준 완화 -

- 행정안전부(윤관 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편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학교부지 내 체육관, 문화시설,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지원하고, 인근 주민편의를 얻을 수 있는 시설
- 자치단체의 원안 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 완화(0.5%→4%), 정기심사 확대(8회→4회)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 이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의 협력을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2020.6.8부터 시행)
-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 총 4건에: 기존 지자체 202건 이상, 광역 지자체 302건의 대상 심사 필요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 심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약 3개월의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교육부 **보도자료** **시사-백화** **시사-백화**

2020. 5. 27(수) 배포

담당자: 지방교육정책과 / 담당자: 김 철 000 / 사무관: 000 (02-944-203-4199) / 02-944-203-4520

**수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심사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윤관 진)는 시도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제정된 타당성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공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심사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새로운 경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0. 6. 2(화) 배포

담당자: 2 / 연락처: 000 (031-8008-4101) / 000 (031-8008-4140) / 000 (031-8008-4128)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로 최대 9개월 단축**  
 - 도의 규제합리화 조기 개징 건의로 정부 수혜

- 행정안전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신설에 투자심사 한 번만 실시
- 도, 광역 공동투자심사 심판회 등 규제합리화 건의
- 수도 학교복합시설 추진 등에 조기개징 건의
- 공동투자심사 간소화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심사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 전망이다.

경기도는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징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각자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한국지정개발연구원(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중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행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등 총 18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공동투자심사로 6개월, 공동투자심사 3개월 등 총 9개월로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든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방행정비 투입되는 학교복합시설 건설 건립의 관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공동투자심사 심판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031-8008-4105)

##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억울한 소매인 영업정지처분 면제〉

### • 개선배경

- 현행 담배사업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음.
-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분으로 개선이 필요함

〈피해사례〉 편의점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으나, 경찰조사 시 위조한 신분증으로 밝혀져 소매업주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음

### ▶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면제 건의

※ 관련규정 :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2개월간, 2차 3개월간 영업정지	-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면제

### • 추진과정

- 청소년 담배 판매(신분증 위조 등) 과도한 행정처분 규제 인지·검토 : '19. 4월 ~ 9월
-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담배사업법 개정 건의 : '19. 9. 10.
-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중장기 검토' 의견 회신 : '19. 10. 2.
- 수퍼마켓 소상공인 청소년 담배 판매 규제애로 현장 조사 : '19. 10. 16.
- 규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 '19. 10. 30.
  - 피해마트 방문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 「민관합동 민생규제협의체」 개최하여 청소년 담배구입 방지 위한 법률 개정 요청 (국무조정실 등 참석) : '19. 11. 26
-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수용' 의견 회신 : '20. 3. 24.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개정 : '20. 3. 31 / '20. 6. 24

## • 개선효과

- 편의점 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및 불필요한 행정소송·심판 소요비용 절감
-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자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져 청소년 탈선 방지 효과



## • 개정법령(담배사업법 제17조)

개 선 전	개 선 후
<p>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lt;신 설&gt;</p>	<p>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7.1]</p>

〈추진부서〉 경기도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894)

## 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 〈공장유도화지역내 골재공장 불승인〉

### • 추진배경

- 공장유도화지역에 골재공장 승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과 생명 안전에 위협을 받는 주민 보호 필요
  - 공장유도화지역\* 내 부지면적 13,170㎡, 파쇄·분쇄기 400마력 5대, 덩크25톤 600회 운행분량의 골재 분쇄·파쇄공장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농작물 오염, 마을길 포화, 농업(생업), 어린이집 및 사찰 등 생존권 위협한다며 주민 465명 집단 민원 제기
    - \* 공장유도화지역이란?
      - 공장 등 건축물의 분산입지를 지양하고 집단화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 목적으로 조례(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유도지역임
      - 해당기준(용도지역, 건축용도, 거리,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 골재공장 불승인 처분 및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추진

###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 유도화 지역 허용</li> <li>-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피해 유발업종(골재공장)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유도화 지역 폐지</li> <li>- 계획관리지역내 환경피해 유발업종에 골재공장을 제한업종으로 추가</li> <li>※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li> </ul>

- 골재공장 불승인 처분 항소로 3년에 걸친 행정소송 최종 승소('20.3)
- 김포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 제외조항(습식은 제외한다) 삭제 개정 건의('20.1)

### • 개선효과

- 정온시설(종교시설, 어린이집, 농가주택 등)의 생명·안전 보호와 관련법 및 제도 개선으로 시민 환경피해 근원적 차단 기반 마련



## 규제 완화에 앞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자



김포시 기업지원과  
**정진호**  
(031-980-2894)

이번 규제합리화경진대회는 기존의 규제완화, 규제개혁과 다른 점이 있다. 기존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주는 것에 중점을 둔 대회였다면, 올해는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규제합리화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의 규제완화의 부작용으로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무분별한 공장의 난립으로 난개발지수 1위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난개발이 심한 일부 지역주민의 질병발생률이 높게 조사되기도 하였다.

법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사람을 위해 필요한 법이 오히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자이다. 법령을 집행할 때 기계적인 적용보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례는 규제완화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묵묵히 꼭 필요한 규제를 강화해왔던 업무가 발탁된 사례이다. 이번 사례가 많은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데 노력하는 공직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 • 추진과정

-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협의 3('19.2.12./'19.4.9./'19.9.25.), 국회 토론회 개최('19.3.12.), 전문가와 법령 개정 회의('19.2.26.) 등 실시
- 전국 최초 민·관 공동사업 추진으로 변호사 자문 4회,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2회를 실시하여 소유권 및 예산 집행 방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
- 사업지 발굴을 위해 조합원, 임원 및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지 선정
- 부천시-부천여월LH조합-LH와 제1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19.4.9.) 및 세부협약('20.8.21.)을 통해 공영주차장 85면 설치 및 임대주택 29호 건립 추진
- 부천시-삼협연립3차 조합과 제2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협약('19.8.5.) 및 세부협약('20.7.28.)을 통해 인근 역곡남부시장에 공영주차장 50면 설치 추진
- '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국도비 33.1억 및 '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국도비 19.1억원 확보

## • 개선효과

- 국내 최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민·관·공 신(新)공유경제 모델 창출
- 원도심 등 낙후지역 주차공간 확보로 지역주민 생활 편의성 향상
- 단지 주변 불법주차 해소로 교통 흐름 원활 및 보행공간 확보로 주거환경 개선
-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확보로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 조감도



〈부천여월LH〉



〈삼협연립3차〉

## • 보도자료

### 경인매일

HOME > 경기뉴스 > 경기서남부

## 부천시, 제1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세부협약 체결

김장운 기자 | 승인 2020.06.24 11:39



부천시가 시청 만남실에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세부협약을 체결하며 제1호 마을주차장 조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사진=부천시)

(부천=김장운기자)부천시가 시청 만남실에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세부협약을 체결하며 제1호 마을주차장 조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

이번 협약은 작년 4월 체결한 기본 협약에 이어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방국욱)·한국토지주택공사(LH)·시(市)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세부 협약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방국욱 조합장, 장중우 LH인천지역본부장이 참석하여 역할 분담, 사업비 부담·지급·정산 방법, 임대료 산정·지급 방법 및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합의했다.

전국 최초 민간·공이 협력하여 조성될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제1호는 공동주택(112세대), 임대주택(29세대) 및 공영주차장(85면)을 포함한 복합시설물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지하2층 부분의 토지를 제공하고, LH는 정비조합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부담하며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1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은 여월동 9-28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해있다. 주차장 완공에 따라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성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여월LH참여형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46억 중 33.1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2023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세부협약은 원도심 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기능하기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이라며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정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동시에 확보하는 혁신 사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장운 기자

## 주차·주거문제의 창의적 해법!

### <민관 협력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



평택시 건축허가과  
**권 오 철**  
(032-625-377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결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및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사업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신 전임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주거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살고자 하지만 각자의 이유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는 전국 2위의 인구밀도를 자랑하지만 중·상동 신도시 등 아파트 밀집 지역을 제외한 원도심 지역은 주택이 노후되고 기초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차장 부족은 이웃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부천시는 법 신설(2018년 이후) 이후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경기도 전체 사업 80%인 160여 구역이 진행되고 있어 정비사업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전국 최초 민-관 공동건립 사업인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이 어려운 사업을 왜 하는지? 굳이 민간이랑 공동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등 많은 의문의 눈초리를 받으며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렇게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 발굴 및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고 안주하지 않는 적극적 행정처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진부서〉 경기도 평택시 건축허가과(031-8024-4160)

### 건축인·허가 절차개선으로 투명성 Up, 처리일자 Down

〈건축인허가 1회 협의 후 재협의 생략, 새움터 활성화〉

#### • 개선배경

- 건축인·허가 신청 시 상시적 보완 및 재협의, 협의부서 지연회신, 담당자 별 업무편차 등 원인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어 민원인 불편 고조

▶ 건축인허가 절차 단축 및 매뉴얼 제작으로 신속·정확 업무처리 가능

####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건축부서에서 설계자와 협의부서 간 전달 역할 수행으로 보완요구 시 재협의(문서 발송)요청이 있어야 처리 가능 (설계자 ↔ 건축부서 ↔ 협의부서)	(절차단축) 재협의 절차 생략(8단계 → 5단계로 단축) In-out창구 통합, 설계자 ↔ 협의부서 직접 연락하여 재협의 없이 결과 회신
○ 건축복합민원의 협의부서가 새움터에 협의 의견을 입력하기 전까지 건축부서 및 설계자는 진행상황을 모름	(보완감축) 각 부서 새움터 상 협의 간에 최초 검토, 보완요청, 최종결과 입력 등 진행과정을 공유하여 소통 및 투명성 제고
○ 근무경력, 법령해석 등 담당자별 업무편차 존재	(편차감축) 주요 체크리스트 및 반복 보완사항 등을 기재하여 건축 인허가 매뉴얼 제작,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실현

#### • 개선효과

- 건축허가 소요일수 단축 ('18) 57일 → ('19) 26일 → ('20) 22일
- 보완 요구 횟수 감소 ('18) 1.81회 → ('19) 1.35회 → ('20) 0.98회

○ 건축인허가 프로세스 개선(8단계→5단계)



○ 세움터 활용(진행사항 공유)

설계자	건축허가·신고	세움터
건축부서	인허가 관련 협의부서 협의 요청	8시간 이내
협의부서	① 보완사항 설계자에 직접 연락, 세움터 입력	8시간 이내
건축부서	② 보완사항 취합하여 총괄 보완사항 입력	5일 이내
설계자	③ 보완사항 제출(건축부서 재협의 문서 없이)	보완기한 내
협의부서	④ 처리가능, 조건부처리, 불가 중 택1 결과 회신	처리기한 내
건축부서	건축허가·신고 처리 / 법령위반사항 설계자 행정조치	협의 완료 후 1일 이내



경기도 평택시 건축허가과 **조영주** (031-8024-4160)

직원 모두의 동참으로 이루어낸, 신속 행정  
 건축인허가 절차개선은 주관부서인 건축허가과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시작되었지만 여러 직원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주관부서, 협의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추진부서〉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462)

##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지원 절차 간소화〉

### • 개선배경

####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개요〉

- 내 용 :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대 4년) 지원
- 대 상 :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 신용 1~9등급(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중인 자, 면책·파산 후 5년 미경과자 등 제외)
- 추진방법 : 道-주택금융공사-농협은행간 3자 협약을 통한 지원

- 신청자는 사업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7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출 실행까지 약 20일 이상 소요됨
  - 신청자격유형 중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경기도에서 발급한 추천서가 없더라도 농협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이자지원 대상 여부 판단 가능
  - ⇒ 지원 절차 간소화(국민·영구임대주택)를 통해 기간 단축 및 신청인의 편의 증진 필요

#### 〈기존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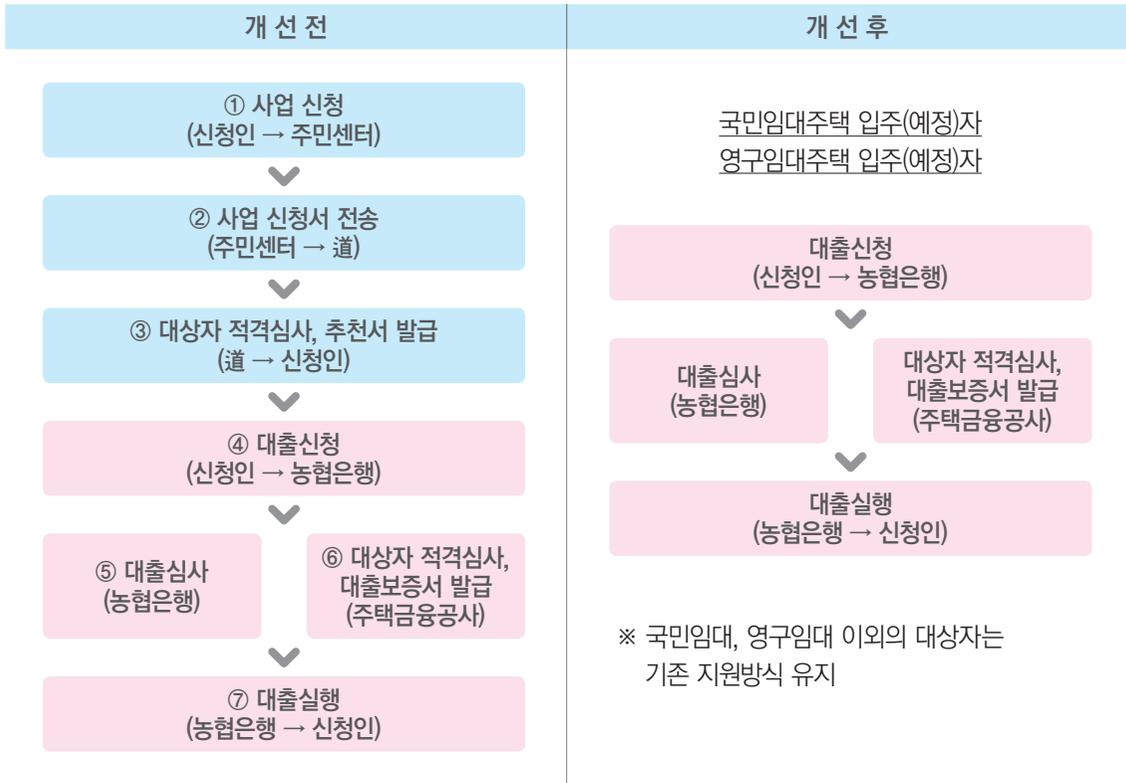
- ① 사업신청(신청자→주민센터), ② 신청서 전송(주민센터→道), ③ 대상자 적격심사, 추천서 발급(道→신청자), ④ 대출신청(신청자→농협은행), ⑤ 대출심사(농협은행), ⑥ 보증서 발급(주택금융공사), ⑦ 대출실행

#### ▶ 사업 대상자 중 축소할 수 있는 범위 내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 개선내용

-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한해 ①~④단계 절차(경기도 추천서 발급 절차) 생략
  - (기존) 사업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7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출 실행까지 약 20일 소요
  - (변경) 사업대상자가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道の 추천서 발급 절차를 생략
  - ▶ 신청~대출실행까지 약 5~10일이 소요, 논스톱 대출 상담 가능

### · 개선내용



### · 개선효과

- (기간 단축)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신속 처리 가능(20일 소요 → 5~10일 소요)
- (효율성 향상) 은행에서 바로 상담 및 대출 신청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가능



## 〈추진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위생과(031-828-2931)

# 커튼 설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 • 개선배경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와 분리해야 영업신고 가능함
- 쇼인쇼п(shop in shop)형태로 운영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 타 업종과 공중위생영업을 동시에 신고(미용업 공동 사용 제외)하는 경우 별도의 출입문 설치 또는 방·벽·층 등으로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된 경우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공사비 발생 등 영업주의 경제적인 부담과 불만 야기

#### ▶ 현실에 맞지 않는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건의

#### 〈미용업 현황〉

- 미용업은 전체 공중위생업소의 60% 이상 차지하며, 전체 미용업의 22%가 경기도에 위치
- 경기도 내 공중위생업소 중 미용업소는 전체 공중위생업소의 66% 이상
- 의정부시 공중위생업소 2천여개 중 미용업은 1천 4백여개로 70% 이상 비중 차지

※ 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일반기준

###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공중위생영업장과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는 분리되어야 함	- 공중위생영업장과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는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함 →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장소 구분

### • 추진과정

- 의정부시는 우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을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 보고회'를 개최, 해당 건의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추진
- 관련 분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고 합동 현장방문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

- 보건복지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 '분리' 규정을 '구획이나 구분'으로 완화하도록 개정 ('19.12.31.)

## • 개선효과

- 흡인습 등을 포함한 별도의 분리 없이 구획 또는 구분만으로 영업신고 가능한 장소 확대로 일자리 창출 가능 및 영업주의 편의 도모
- 시민의 편의증진과 수요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흡인습 매장 증가로 관련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 위생영업신고 건수 증가
- 기존 벽이나 방으로 구분되어 있던 공간에 다른 사업자 입점 시 기존 설비 철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폐기물 처리 등 낭비 절감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전국적 확대 적용되어 많은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파급효과 실현



〈옷가게 내 커튼으로 구획한 네일숍〉  
영업신고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영업이 불가함



〈미용실 내 가발판매〉  
구획만으로 미용업과 소매업을 함께 운영